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2. 16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6. 2. 26
- 다. 상정일자 : '96. 2. 29 (제42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병 일

나.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등에게 사회복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준칙(안)에 의거 화순군세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

다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세 감면 확대 (안 제2조)
 - 상이급수 1급내지 5급 → 1급내지 6급
-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확대 (안 제4조)
 - 장애자의 본인명의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세 감면
- 임대주택에 대한감면 규정확대 (안 제11조)
 - 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도 종토세 및 재산세 감면
-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감면 (제1항 제4호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개정안은 내무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(안)이 시달되어 법령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부 :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